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225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22520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4035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주영

변론종결 2022. 6. 14.

판결선고 2022. 7. 12.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4035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취소. 피고 B은 강원 철원군 D 대 439㎡ 및 그 지상 연와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72.99㎡에 관하여, 피고 C은 강원 철원군 E 답 2,082.2㎡에 관하여 각 2019. 11.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3쪽 8줄부터 마지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변론과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F이 갑2(서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2(서약서)는 F의 인영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컴퓨터 문서 작업으로 작성되었는데, F은 컴퓨터 문서 작성을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서를 F이 직접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② F은 2019. 무렵 폐암 항암치료를 위해 자녀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F의 인감도장은 주거지인 철원에서 F과 동거하던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원고는 F과 원고의 중요문서를 원고가 함께 보관해 왔다고 하는바, F의 인감도장도 함께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F과 원고가 26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낸 것은 상속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F이 사실상 상속을 인정하는 취지인 갑2(서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분쟁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갑2는 증여 계약서로 보기에 지나치게 간략하다. F은 다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기에 갑2

수준의 문서라면 충분히 자필로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다. 문서 작성일시도 분명하지 않아 '2009. 11.'를 '2019. 11.'로 고친 부분에 아무런 정정 확인 표시도 없고, 날짜는 아예 표시되어 있지도 않다(청구취지의 증여 일자는 원고 스스로 특정한 날짜이다). 갑2는 문서 형식만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F은 본인과 딸 G 외에는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갑2만으로는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뒤늦게라도 원고를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

④ 원고는, F이 폐암 발병으로 인하여 재산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의 생계 보장 등을 위하여 원고와 동거하던 이 사건 주택 등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0. 강원 철원군 H 대 462㎡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여서 그 거쳐 마련 등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은 2020. 1. 무렵 자녀들에 대하여는 재산 정리 차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서도 2020. 6. 무렵 사망할 때까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주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